

상주시 공고 제2023-1344호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상 주 시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4조)

- 설치·관리자의 책무 확대(안 제4조)
- 공중화장실등에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안 제4조의3)
-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기준 마련(안 제4조의4)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항 신설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2) 안전관리 시설 지정 여부, 설치대수 등 관리항목 별지1 반영

다.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정 수정(안 제12조)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18조 및 별표)

- 1) 미신고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마. 기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조례 용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9. 26. ~ 10. 16.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처: 상주시장(환경관리과)

-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환경관리과)
- 2) 이메일: blueyium21@korea.kr
- 3) 팩 스: 054-537-6189(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일괄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